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6.4.26(화) 17:30

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3. 제안 이유
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-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고, 심의 위원을 의료·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

4. 주요내용

- 가.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(안 제2조)
- 나. 심의회의 기능 개정(안 제3조)
- 다.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개정(안 제4조)
- 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은 물론,

-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고, 심의 위원을 의료·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